

# 가정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사실의 발견방법에 관한 일 연구\*

## A Study on Ways of Finding Sexual Abuse Facts of Children at Home

울산전문대학 여성교양과  
조교수 전형미

Dept. of Woman Culture, Ulsan Junior College  
Assistant Prof: Hyung Mi Chun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학대사실의 발견을 위한 구체적 방법 |
| II. 연구방법  | IV. 결론 및 제안<br>참고문헌      |

### 〈Abstract〉

This paper is study the ways of finding sexual abuse facts of children at home and the standards of recognizing such facts. The investigation and recognition about sexual abuse of children are necessary for remedy or care of children and their family, and also for punishment upon the harmer or sanction against him by family laws. But, on account of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abuse acts and the standpoint that sufferers are children, it's very difficult to find those kinds of facts.

Medical examinations, observations by specialists on behavioral indicators, use of dolls & other props, and interviewing are applied to finding sexual abuse facts of children. However, these investigating methods have many uppermost limits, and don't necessarily have conformable conclusions. Especially 'interviewing' is essentially used to find a child who has suffered sexual abuses, and to investigate and examine a harmer who has been charged with such sexual acts. But 'interviewing' has no less obstacles in reality than has some utilities. For that reason, a follow-up study of (what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is required, with the case-by-case application of other methods. And along with that, i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in process of finding a sexually abused child and in *ex post facto* measure against accompanying ill effects, the child's protection and the family's privacy ought to be

\* 본 연구는 1996년 울산전문대학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legally guaranteed. So to speak, in making and enforcing the family laws, a profound study of the family to produce good fruits must be made.

##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아동학대에 관한 많은 연구는 가정내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oulborn-Faller & Corwin, 1994; 안동현, 1993). 성적 학대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성적 학대사실(finding facts)의 발견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학대사실의 입증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긴급하며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절차와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후제도(신현덕, 1995), 예를 들면 가족치료프로그램의 실시가 시작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피학대사실의 입증은 법적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거나 법적 평가에 반영하는 - 장기적으로는 성적 학대행위를 예방하는 - 일련의 법률 즉,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제18조9호), 형법상 학대죄(제273조 제1항)와 정조에 관한 죄(제32장), 민법(제924조) 및 아동복지법상(제15조) 친권상실의 선고, 민법상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제837조의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해석과 적용에서 유의의하기 때문이다.

(2)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의 행위에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학대행위의 예방을 위하여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적 학대행위의 격중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법적 제재 건수는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Nuce, 1991).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① 법규정의 애매함에 있다. 우리 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의규정은 없다. 형법은 아동학대죄에 성적 학대행위가 포함되는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단

지 학설상 포함되는 것으로 새겨질 뿐이다. 1991년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나의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면서 성적 학대개념을 세밀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을(Fahn, 1991) 참조할만 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가정내의 성적 학대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개념과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개념을 빌려쓰고 있을 뿐, 더 세밀히 규정하는 바가 없다. 아동복지법의 규정 또한 아동학대행위 중에 성적 학대행위가 포함되는지를 밝히지 않는다. ② 우리 법에서는 성적 학대행위를 범문제화 시킬 기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③ 학대행위를 인정할만한 사실을 찾아 내고 이를 증거로 하는 기술이 미흡하다.

위의 여러 문제 가운데 이곳에서는 성적 학대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에 국한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① 아동과 가족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적 학대문제에 대한 사법적 간섭이 증가할 것이다.

② 미국처럼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어린이의 피학대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를 지우는 일련의 성문 입법들(child abuse reporting statutes)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는 바(이재연, 1995; 최재욱, 1995), 이러한 입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법적 다툼이 증가하며 이는 결국 증거싸움(evidence contest)에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학대행위가 당사자들에게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인정을 둘러싼 다툼은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④ 미국에서는 이혼시 배우자의 유책성, 친권자의 적격성, 자녀양육권의 제한 또는 박탈(Horner, Guyer & Kalter, 1992), 자녀면접교섭권의 배제나 제한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여부

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민법개정시 신설된 면접교섭권 문제(전형미, 1995)만 하여도 앞으로 가정내 아동 학대사건의 증가 등과 맞물려 현실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이혼소송의 약 30%는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에 관한 부모간의 다툼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Levy, 1989). 이때에는 책임있는 이혼배우자의 양육권행사 또는 면접교섭권행사를 계속 허용하면 자녀가 성적 학대의 위험속에 계속 방치된다는 점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유지·복원과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부모의 친권 또는 면접권이 부당히 박탈 또는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실의 정확한 발견이 필요하다(Levy, 1989; Fahn, 1991; Myers, 1989~90; Jones & Parkinson, 1995).

⑤ 위와 같은 민사상 이유뿐만 아니라 형사상 이유에서도 사실인정은 중요하다. 성적 학대가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었는가를 밝힘으로서 가해자처벌과 격리, 가해자와 피해자 및 가족의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문제가정에 대한 국가간섭은 증언으로 인한 아동의 심적 손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Skibinski & Esser-Stuart, 1993).

그러나 실제로 사실발견과 인정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성적 학대의 다음과 같은 특성에 기인한다.

① 학대행위는 주로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행하여진다(Margolin & Craft, 1989; 김현수·신화식, 1995). 그 결과 목격자가 거의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가해자는 피해아동에 비하여 가족내 역동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아동의 진술을 억압하거나 상처를 은폐하거나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족들 또한 가족에 대한 외부의 비난이 두려워 문제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Fahn, 1991; Wurtele & Miller-Perrin, 1993; Kaplan, Becker & Martinez, 1990). 조주현(1993), 박동섭(1996)의 연구는 이점을 실증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③ 아동이 학대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

우가 있다. 또 진술이 정확하지 못하며 논리성이 결여되기 쉬우며 기억력에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아동은 진술 및 증언 능력면에서 가해자와 대등한 한쪽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④ 조사는 아동의 고통을 확대·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조사방법·기간등이 제한된다.

⑤ 가족간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애정표현행위와 성적 학대행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때가 많다(Fahn, 1991).

⑥ 사회적 통념은 부모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진현희, 1993)는 가정내 아동학대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내 성적 학대행위를 잘 믿지 않으려는 일반인의 생각을 깨고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⑦ 아동보호서비스기관의 가정환경조사원(caseworker), 또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사실관계의 발견에 소극적이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또 아동학대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사도 자기가 발견한 학대사건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吉田, 1993).

위의 여러 사정때문에 가해자의 유책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Fahn, 1991). 여기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존부를 확인할 효과적이며 신빙성있는 조사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강조된다(Lamb, 1994).

지금까지 아동의 성적 피해사실을 발견하는 방법과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는 주로 의학적 관점(안동현, 1993; 홍강의, 1988; 이배근, 1993)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발견은 때를 놓치거나, 사실발견을 위한 사법절차에 가족 연구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한 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사법절차는 그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로서의 아동의 치료 및 가족의 복원이라는 최종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기껏 가해자의 처벌에 급급하거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2차적인 손상을 입히고 사회적 낙인을 초래하

는 일이 빈번하였다. 예를 들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주위의 따돌림을 받는 일은 흔하고(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992), 1996년 모지방의 「소녀가장에 대한 집단추행 사건」에서처럼 '피해아동이 꼬리를 쳤다'는 식의 감정적인 질타행위가 행하여지기도 한다(조선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오늘날 가정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사실이 빈번히 보고되고 이를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그 가정에 대한 관여는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여겨지고 있다(신영화, 1986; 박종삼, 1989; 윤희미, 1994; Kempe & Kempe, 1978).

그러나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개입과 원조는 철저하게 가족을 주제로 한 관련 학문의 성과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관한 가족학의 관심이 주로 가족역동성 및 가족관계의 변인을 고려한 원인의 규명과 치료방안의 제시에 집중되어 많은 성과를 얻었으나 이를 법현실에 반영하는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과제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각국에서의 가족연구는 아동의 성적 학대사실의 발견과 이의 처리에 관하여 어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참조하면서 성적 학대사실의 인정방법을 검토하고 그 법적 취급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다만 법적 과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적으로 문헌에 의존하여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만일 본 주제를 실증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나라의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성적 학대사실의 주체, 피해자, 학대정도 및 양상, 회수,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의 연속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

술한 바와 같은 여러 이유로 이와같은 조사는 매우 어려우며 형사정책학에서 말하는 다수의 암수가 존재한다. 또한 피해아동의 성년 후의 반응과 징후 등 장기간의 관찰을 필요로 한다.

성적 학대사실에 대한 각종 조사나 통계가 일치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자의 주관적 의도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왜곡된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는 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낸다.

아울러 본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증거를 발견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부모, 교사, 의사,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과의 면접 또는 설문조사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생략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는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제약이 있으나 다수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인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III. 학대사실의 발견을 위한 구체적 방법

### 1. 증거발견을 위한 전문가집단의 의견서

구체적으로 학대행위의 발견방법과 학대사실의 인정기준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행하여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증거에는 의적 증상, 목격자의 신고나 증언, 아동의 음란물에 등장시킨 경우의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영상물, 학대행위자의 자백 등이 있다(Coulborn-Faller & Corwin, 1994).

1993년 스웨덴에서 각기 법제도와 사회적 배경이 다른 여러 나라의 의사·법률가·심리학자·아동보호기관종사자 등이 망라된 전문가집단이 발표한 의견서는 아동의 신체적 증상을 검사하는 방법, 아동의 행위 징표를 관찰하는 방법, 아동을 면접하는 방법, 인형과 소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조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 2. 의료검사(medical examinations)를 행하는 방법

이는 의사에 의한 신체검사를 행하여 학대사실의 존부를 밝히는 방법이다.

대다수의 조사는 진찰방법을 활용한다.

신체검사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사고 직후에 진찰을 실시함으로써 용이하게 신체적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② 진찰이 아동에게 아무런 신체적 손상을 주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아동과 가족에게 설득시킴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③ 상처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며(성기 검사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Lamb, 1994), 계속 관찰 및 법원의 증거 제출을 위하여 진찰의 전 과정을 녹화한다. ④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비의료전문가가 그 진찰의 뜻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보고서를 문서로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조사방법의 장점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통계자료의 축적으로 신체의 문제부위에 대한 가해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사의 자질, 의료장비의 구비여부, 조사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의적조건이 반드시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체적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성적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Lamb, 1994). 또한 피해자에게 전혀 신체적 증상을 남기지 않는 성적 학대방법도 많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3. 행위징표(behavioral indicators)를 관찰하는 방법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어른의 성적 행위를 흉내내는 행동들을 빈번히 실연한다는 가설과 여러 특이증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근거한 조사방법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1). 즉 성적 학대아동증후군(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Syndrome)이 있는지를 살핀다. 피학대

아동이 나타내는 증상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Gupta & Steven, 1988; Wurtele & Miller-Perrin, 1993). 일례로 Summit는 이를 과묵해짐, 무력감, 함정에 빠뜨리기와 조정, 지체나 갈등이나 설득력없는 표현, 위축의 다섯가지로 범주화 하였으며(Summit, 1983), 이들 증상이 성적 학대사건에서 증거로 채용되기도 하였다(People v.Luna사건, 1988).

이와같은 징표들을 고려하는 것은 현재 성적 학대 피해의 신체적 증상이 전혀 없을 때 특히 의미가 있다(Wurtele & Miller-Perrin, 1993).

그러나 위와같은 징표들은 피학대경험이 없는 아동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같은 행위징표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그 아동을 피학대아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Levy, 1989). 또 성적 학대의 피해아동들이 나타내는 행동의 증후군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학자에 따라 분류하는 바가 다르다. 피해아동들의 반응은 아주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성적 행위 또는 이를 모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그와같은 행위를 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학대 경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그와같은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보다 더 기술적인 관찰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가 될 것이다(Lamb, 1994).

## 4. 인형과 소품(dolls and other props)을 사용하는 방법

오늘날 성적 학대사실을 입증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면접과 인형의 사용이다. 이때의 도구로는 물체, 인형, 사람형상을 그린 그림, 필기구와 종이 등이 활용된다. 특히 이른바 해부학적으로 정밀한 인형(anatomically detailed dolls)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된다(DeLoache & Marzolf, 1995). 해부학적으로 정밀한 인형이란 흔히 가족의 모습 즉 부모·아들·딸로 구성되고 각 인형은 입과 성기 등이 신체의 각 부분과 같은 비례로 만들어지며 정확한 위치에 배열된다. 인형의 피부색은 인형을 다룰 아동의 피부색과 일치하게 준비된다. 이 인

형의 효용은 1976년에 발견되었고 성적 학대조사에 활용되기 위한 인형제작이 시작된 것은 1980년이지만 오늘날 가장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Levy, 1989).

인형은 아동이 신체의 특성 부위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아동이 자기의 경험을 인형에게 말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는 인터뷰 조사가 행하여진 후에 아동이 경험한 사실을 재현하기 위하여 혹은 아동이 구사한 단어가 부적당한 것일 때 그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기 위하여 인터뷰 이후에 이 방법이 추가되기도 한다. 특히 면접아동이 어리거나(5세이하) 또는 아주 어리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과묵하거나 좀처럼 속을 터놓지 않는 아이인 경우 보조도구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인형이나 소품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① 그와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질문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우려된다(Levy, 1989). 그러므로 정보형태를 암시하거나 아동의 진술을 조사목적에 맞추어 미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보호 기관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아동보호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와 같은 주관적 개입이 자주 이루어지나 그들은 인형의 정확한 활용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지적(Levy, 1989)되고 있다.

② 인형이 문제의 아동이 경험한 상황에 부합되게 제작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례가 흔히 보고된다(Levy, 1989).

③ 피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일지라도, 막상 그에게 해부학적으로 정밀한 인형이 주어졌을 때 통상은 학대당한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성적 행위를 실행해 보일 수도 있다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Cohn, 1991). 즉 아동의 인형놀이와 학대경험은 절대적 연관성이 없으며 오늘날과 같이 아동들이 성적 표현물(포르노 그라피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Levy는 이상과 같은 사실과 함께 아동보호의 강박관념과 사회적 비난 여론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법

관의 편견을 고려할 때 인형놀이에서 얻어지는 증거는 법원이 전적으로 배척하여야 한다고(Levy, 1989) 주장한다. 나아가 Deloache와 Marzolf(1995)에 의해 인형사용에 대한 보다 통계적인 자료가 제시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인형사용의 효과는 연령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4세이하 아동들은 자기묘사의 수단으로 인형을 이해하거나 갖고 노는데 익숙하지 못하므로 학대사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인형사용 방법은 5세~7세의 아동들에게는 보다 효과적이지만 그 이하 연령의 아동들에게는 오히려 인터뷰과정에서의 답변이나 태도를 정확히 관찰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인형이용의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형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른 행동의 유도를 금지하고, 아동이 인형이나 소품들을 갖고 놀면서 구두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행동으로 나타낸 바에 대한 의미를 구두질문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인터뷰를 추가할 필요성이 크다. 아울러 1993년의 전문가회의는 법정 제출을 위하여 인형 테스트를 녹화하도록 권유하고 있다(Lamb, 1994).

## 5. 피학대 아동에 대한 면접(interviewing)

### 1) 아동의 증언에 대한 신뢰와 회의

면접은 아동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학대사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성적 학대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는 피해아동의 부모와 형제 등 주변인물에 대하여도 필요하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1). 그러나 가해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가족 성원의 욕구 때문에 학대사실의 발견은 피해자조사가 중심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과연 신뢰할만한, 즉 관련 전문가들이 납득하고 더 나아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의 기초로 삼을 만한 진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회의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동의 진술은 성인의 진술에 비하여 그 신뢰도가 낮다고 주장하여

왔다.

① 아동의 기억력은 어른에 비하여 떨어지며 특히 세밀한 사항에 대한 기억이 애매하다.

② 아동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③ 법정 안에서나 밖에서의 진술시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기 쉽다.

④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무감이 약하여 진실을 말하기로 하는 증인 섰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다.

미국의 경우 아동성학대보고 건수가 1976년 연간 6000건정도에서 1993년 연간 33만여건으로 크게 증가함과 아울러(Coulborn-Faller & Corwin, 1994) 아동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의 진술이 성인의 그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학생 또래인 사람의 기억력에 대한 기초조사, 성인목격자에 대한 조사, 아동의 기억에 대한 비교조사 따위가 (Penrod et al., 1989) 그것이다.

아동의 진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동은 증거를 조작할 수 없으며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Children never lie」라는 문구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서 빈번히 발견된다. 1993년의 전문가 회의도 아동이 경험사실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Lamb, 1994). 또 5세이상 아동의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력은 어른과 큰 차이가 없다는 실증적 연구도 나왔다(Goodman & Reed, 1986).

그러나 Levy는 위와같은 법원의 태도는 근거없는 신화를 신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의 성학대사실을 조작·증언한 아동의 진술이 법원에서 문체된 사례를 실례로 제시하고 있다(Levy, 1989).

이상과 같은 여러 견해가 있으나 아동의 진술능력에 대하여 단언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a. 조사받는 아동의 연령이나 사물에 대한 지각정도 b. 침해행위가 있을 때로부터 조사시까지의 시간의 지체 c. 질문의 방식, 예를들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사지선다식의 질문에 의하여서 가 아니라 아동이 그들의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토로

할 수 있는 자유해답식의 질문(open-ended questions)

d. 특정한 답변을 강요 또는 유도하는 조사자의 의도의 존부 e. 조사자의 숙련도 등이 답변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변인이 된다. 아울러 학대경험아동의 반응에 대한 데이터화가 요구된다. 미국아동학대전문가회(APSAC)가 인정한 「어린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혹의 심리사회적 평가에 대한 지침」은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다(Faller & Corwin, 1994).

## 2) 피학대 아동의 증언에 대한 법적 문제

아동에 대한 면접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아동을 조사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제기한다.

영국을 비롯한 보통법 국가에서는 특히 7세이하 아동의 증언은 유죄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 다만 최근 몇년간 큰 변화를 보여 지금은 대다수 국가에서 아동의 진술은 이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Plotnikoff & Woolfson, 1995).

각국의 현행 형사절차법들은 대부분이 성인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므로 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삼거나 아동이 증인이 되는 것은 여러가지 배려를 필요로 한다. 첫째, 아동의 기억력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그들의 증언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소위 2차적 피해(岡上, 1994)가 문제된다. 예컨대 아동보호호관련기관, 경찰, 검찰 등에서의 조사는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나 심리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형사절차상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에는 법원은 교차신문 방식에 의하여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아동을 당사자간 공격·방어가 치열한 법정에서 출정시켰을때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지는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이며 아동을 가혹하게 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미국의 법조계는 이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였으며(Juvenile & Family Court Journal, Vol.37, no.2, Skibinski & Esser-Stuart, 1993), Fahn(1991)은 아주 세밀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여러 입법 조치가 강구되었다. 예를 들어 피학대사실에 대

한 증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성적 학대의 개념을 넓게 정의 한다든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소송 절차나 증거법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서 워싱턴주에서는 근친상간의 정의를 확대하였다. 후자의 예로서 연방의회는 1994년에 아동학대(child molestation)나 성폭행(sexual assault)의 가해자를 보다 쉽게 처벌하기 위하여 연방증거규칙(Federal Evidence Rule 제 413조~제 415조)을 개정하였다(Pickett, 1995). 그 요점은 아동학대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관련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아동학대 또는 성폭행사실을 증거로 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적 공격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내세워 그의 악질적 성향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현재 제기된 사건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영미법 체계하에서 200여년간 지켜왔던 증거법의 한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다(Pickett, 1995), 반사회적 성범죄를 척결하려는 미국사회의 여론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다. 다만 이 개정은 피고인 보호의 관점에서는 여러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Pickett, 1995).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입법 동향은 아동을 직접 법정에서 세우지 않거나 출정시에도 그가 받을 심리적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배려하는 일련의 조치들이다. 영국에서는 이와같은 관점에서의 입법이 상당부분 진행중이다(Christina & Peter, 1993). 아동에 대한 반복적, 고압적, 암시적 질문과 법정외 경직된 재판운영과정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는 아동이 법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할 것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岡上, 1994). 또 워싱턴 주에서는 10세 미만 아동이 성적 접촉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바는 그것이 비록 제정법이나 법원규칙에 의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경우에도 ① 그 진술이 행하여진 시기·상황 및 그 내용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징표를 지니고 있음을 배심출석없는 심문에서 법원이 인정할 때와 ② 아동이 a. 절차에 따른 증언을 하거나 b. 증인으로서 출정(出廷)이 불가능하여도 보강 증거가

있는 때에는 그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Wash. Rev.Code Ann. § 9A.44.120(supp.1984)).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법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지는 조사도 아동의 부담이 되기 일쑤이므로 이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접조사과정을 녹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20개주에서는 아동이 법정 밖에서 진술한 것을 증거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전문법칙(rule of hearsay evidence)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을 하였다. 전문은 증인 자신이 스스로 지각·경험한 것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어떤 사실을 직접 인지한 원래의 진술자의 지각·기억·표현·서술과정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반대 심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전문은 그것을 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학대 사건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17개주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하여 증언할 수 있으며 24개주에서는 송신전용폐쇄회로 T.V를 통하여 아동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하였다.

이와같은 입법들은 아동이 처음부터 피학대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는 드물며 반복면접을 통하여 시인을 받아낼 수 있다는 통계자료와는 상반된다(Faller & Corwin, 1994). 그리고 아동의 입장을 배려하는 위와같은 일련의 입법들이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 내지는 피고인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와 충돌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미합중국헌법 수정 제6조가 규정하는 피고인의 대질권(right to confrontation)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아이다호주 대 라이트사건(岡上, 1994)이나 유명한 코이사건(COY v. IOWA, 108 ct. 2798(1988))에서는 피학대아동보다 피고인의 보호를 우선시 하였다(Levy, 1989).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은 1990년의 사건(Maryland v. Craig, 47 Cr.L.2258)에서는 공공정책의 필요성과 증인의 신뢰성이 확인되면 직접대면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1991년의 영국 형사사법법은 아동이 증인이 된 경우 비디오중계에 의한 증언을 허용하며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직접 반대신문하는 것을 금지(제



55조)하였다(최병각, 1995: Plotnikoff & Woolfson, 1995). 우리의 경우 1996년 제정된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법원은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증인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제7조), 이는 아동학대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급한 대로 이 조항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사건의 경우 아동의 입장을 감안하여 법정 진술을 허용하되 그 진술을 법정증거로 채용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고 하겠다. 실제로 미국 법원은 아동의 증언이 믿을 수 있는 것 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의 자발성과 일관성, 진술자의 심리상태, 같은 또래 아동들이 쓰지 않는 용어의 사용여부, 거짓말할 동기의 존부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두가지가 강조된다. 첫째는, 아동에 대한 신문과 함께 그의 신체적 증상, 목격자의 진술, 포르노에 이용된 사실, 가해자의 자백같은 독립적인 보강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는 점이다(Coulborn-Faller & Corwin, 1994). 1993년의 전문가회의 보고서도 아동의 진술과 발견된 신체적 증상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학대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Lamb, 1994). 둘째는, 녹화의 중요성이다. Levy는 미국의 각급 법원이 아동의 진술을 너무 믿는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Myers는 반대로 아동과 이를 믿는 전문가의 증언을 쉽게 배척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고 주장하였다(Coulborn-Faller & Corwin, 1994). 녹화테이프의 존재는 진술의 신뢰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녹화 전에 아동에게 어떤 영향력이 행사될 수도 있으므로 녹화 유무가 진술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아동에 대한 면접과 이때의 아동의 진술은 성적 학대사실을 발견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만일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여 모든 심문절차에 응한다면 그의 진술은 유죄인정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이익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수사 및 재판절차는 아동에게 가혹한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를 노출시켜 오히려 사회적 낙인과 의심의 대

상이 되게 하기도 한다(최석윤, 1995). 여기서 아동의 진술을 전문증거 배척의 예외로 인정하는 입법이 등장하였으나 이는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의 각주는 특별규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고 그 내용에 대한 판례의 해석도 아직 통일적인 것은 아니다. 조급한 입법은 판례상의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Levy, 1989).

그러나 급증하는 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미국 사회의 위기의식이 기존의 법체제와 전통이론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리상의 대응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경우 모든 국민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헌법 제 27조 제3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 57조 제1항).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증인신문 포함)는 재판장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에는 법정 외에서의 심문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제22조). 그러나 동조는 주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고 피학대 「아동」의 심리적 손상을 염두에 둔 규정은 아니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인인 범죄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在廷人)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장은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다고(제297조)하나 아동은 법정에 출정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피해자인 아동의 보호와 가해자의 인권이 조화되도록 입법 및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아동에 대한 치료나 보호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 또는 가족법상의 제재, 성적 학대행위의 예방을 위하여도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적 학대행위의 특성과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의 발견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서 아동 학대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의료 검사의 시행, 전문가에 의한 행위징표의 관찰, 인형과 소품의 이용, 면접의 시행 등이 단독으로 또는 병행하여 활용된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조사방법과 학대사실의 인정기준은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반드시 통일된 평가가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특히 면접의 경우는 학대 아동의 발견·조사·재판과정에서 반드시 활용되는 것이지만 그 효용과 함께 제약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여러 방법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조사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와 각 방법의 적절한 병행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나 아동의 보호와 자칫 상충하기 쉬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훈련·확보와 책임의식·협조체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성인을 포함한 성폭행의 문제로 끼워서 다룰 수 없는 특색이 있으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도 구분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특성을 감안한 실체법을 두거나 절차법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한인섭, 1992).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형법,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크게 미흡하다. 이를 위한 전제작업으로 성적 학대의 법적 개념을 확정하고 입법화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도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국가가 미성년자나 노약자, 정신박약자와 같이 법적 능력이 미흡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doctrine of parens patrial)못지않게 가족자치와 사생활(family autonomy and privacy)의 존중이 강조되고 있다(그 이유는 Meriwether, 1986). 공적 개입은 아동의 법정출석, 의학적 또는 심리적 검사, 가족

으로부터 장기 또는 단기의 격리, 사생활권의 침해, 가족에 대한 나쁜 평판과 불명예의 고통, 가해자로 의심받는 가족성원의 심리적 손상과 가족갈등, 가족해체의 두려움, 가족성원 모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문제를 감안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체의 사법적 절차와 조치는 가족치료의 모델(Noh, 1996; Finkelhor, 1984)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로서 성인을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 형사소송법의 수정 또는 보완은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과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피학대 아동에 대한 원조 또는 법적 구제절차의 정비가 요구된다. 지금과 같이 피학대 아동문제를 다룰 전문기관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 공무원, 비전문적 경찰과 검찰, 아동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법관, 의사나 자원봉사자 등에 의해 「기회가 닿는 대로」 아동을 다루게 될 때의 위험은 매우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세부적으로 문제취급 전문가와 취급 절차를 규율하며 관련자의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② 각 기관간의 협조가 강조되어야 한다. 무익한 질문과 검사절차를 되풀이하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영국정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를 형사처벌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참여와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이화숙, 1996; Plotnikoff & Woolfson, 1995). 미국의 경우 기관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갈등(예컨대 아동보호서비스제공기관과 학대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의 조치간)이 심각하여 충분한 아동보호에 임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Besharov, 1990). 또 의학적 치료에는 정통하나 피학대아동 문제가 어디에서 다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의사도 있을 수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의 합동훈련 프로그램이 강조되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③ 전문가 의견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아동보호기관종사자, 소아과 의사, 수사관과 법관의 자질(Wurtele & Miller-Perrin, 1993), 아동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분량과 적정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충분한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법만 제정하는 한

국의 현실에서 볼 때 전문가의 자질부족과 그에 기인한 전문가 의견의 허구성은 심각할 정도로 추정된다(Wurtele & Miller-Perrin, 1993). 이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은 심각히 대두되어 있다(Horner et al., 1992).

위의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1989년의 유엔의 아동의 권리조약(제3조)의 주요 내용인 이른바 자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단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함께 법적 기관의 종사자들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민사상 권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제한 받게 될 부모의 입장보다는 혹시 아동이 부모에게 계속 학대받도록 방지하여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이나 조급함, 아동학대 행위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여론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 검거에 대한 조급함, 빈번히 접촉하는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의존(Levy, 198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다(김동승, 1996). 아울러 아동의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가정법원과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반 법원간의 “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다른 것도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Edwards & Sagatun, 1983).

끝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인정과 이에 대한 법적 처리과정이 지나치게 가해자처벌을 위한 피해사실발견에 집착하다보면 피해아동의 보호와 그 가족관계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학 연구의 성과가 무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동승, “미국의 아동보호시설내 성폭행(CAS/OHCCS)수사절차”, 치안정책연구 제5호, 1996, 136~147면.
- 2) 김보은·김진관 사건공동대책위원회, “이제,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 김보은·김진관 사건자료집, 1992, 5면, 7~13면.
- 3) 김현수·신화식, “청소년이 지각한 근친상간의 가족역동”,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제6권 제1호, 1995, 60면.
- 4) 박동섭,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제8회 사회윤리심포지엄, 현대사회와 성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6, IV-20~IV-21.
- 5) 박종삼,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58~62면.
- 6) 신영화,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2면.
- 7) 신현덕, “아동학대방지를 통한 아동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보호절차와 사후지도)”, 한국이웃사랑회, 제3회 아동복지지도원 연수회 보고서, 1995, 61~64면.
- 8) 안동현, “아동학대의 진단 및 평가”, 학대아동의 발견과 학대가정의 평가(제9회 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세미나), 1993, 30면이하.
- 9) 이배근, “학대아동의 발견과 학대가정의 평가”, 상계8, 11~15면.
- 10) 이재연, “아동학대방지를 통한 아동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위 7)의 자료집, 1995, 41~43면.
- 11) 이화숙, “가정폭력에 대한 영국가족관련법의 보호조치”, 법학논총 제3호, 경원대학교, 1996, 76~77면.
- 12) 윤혜미,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제12회 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세미나, 1994, 39면이하.
- 13) 전형미,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연구”, 울산전문대학연구논문집, 제20권, 1995, 2면, 18~21면.
- 14) 조주현, “근친강간에 나타난 성과 권력 - 김보은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9집, 한국여성학회, 1993, 90면이하.
- 15) 진현희,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스트레스와 정서적 아동학대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44~48면.
- 16) 최병각, “형사재판과 비디오촬영”, 형사정책연구 소식 1996년 7·8월호, 18면.

- 17) 최석윤,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1995년 5·6월호, 27면.
- 18) 최재옥, “학대아동신고체제”, 한국이웃사랑회, 위7)의 자료집, 53~58면.
- 19)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년여름, 어린이성폭행세미나자료집, 1991, 1-51~2-52면, 5-29면 이하.
- 20) 한인섭, “아동보호와 아동의 권리”, 제8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1992, 9면.
- 21) 홍강의, “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책-한국에서의 아동구타현황과 대책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정책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한국어린이재단, 1988, 75~76면.
- 22) 경향신문, 1996. 7.8일자.
- 23) 문화일보, 1996. 7.8일자.
- 24) 조선일보, 1996. 7.8일자.
- 25) 岡上雅美, “性的虐待の被害者たる子供の法廷外供述の採用とアメリカ合衆國憲法修正6條の對質條項”, 「比較法學」第29卷 第2號, 早稻田大學比較法學研究所, 1994, 54, 55, 61~65.
- 26) 吉田恒雄, “兒童虐待防止制度試論-豫防・發見・通告を中心として”, 高野竹三郎先生古稀記念「現代家族法の諸相」, 成文堂, 1993, 191.
- 27) Besharov, D.J., “Combating Child Abuse; Guidelines for Cooperat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Child Protective Agencies”, Family Law Quarterly, Vol. 24, 1990, 233.
- 28) Christina, L. & Peter de Cruz, “Child Abuse”, Jordan publishing Limited, 1993, 19~20, 273~281.
- 29) Cohn, D.S., “Anatomical Doll play of preschoolers referred for sexual abuse and those not referred”, Child Abuse & Neglect, Vol.15, 1991, 455~466.
- 30) Coulborn-Faller, K. & Corwin, D.L., “Children’s Interview Statements and Behaviors; Role in Identifying Sexually abus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Vol.19, No.1, 1994, 71, 80, 75~76, 78.
- 31) “Court Procedures”, Juvenile & Family Court Journal, Vol.37, No.2, 1986, 27~36.
- 32) DeLoache, J.S. & Marzolf, D.P., “The Use of Dolls to Interview Young Children; Issues of Symbolic Represen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Vol.60, 1995, 171~172, 155.
- 33) Edwards, L.P. & Sagatun, I., “Dealing with parent and child in Serious Abuse Cases”, Juvenile & Family Court Journal, Aug.1983, 13.
- 34) Fahn, M.S., “Allegations of Child Sexual Abuse in Custody Disputes; Getting to the Truth of the Matter”, Family Law Quarterly, Vol.25, 1991, 198-199, 205, 200, 194, 210~213.
- 35) Finkelhor, D., “Child Sexual Abuse”, The Free Press, 1984, 209~210.
- 36) Goodman, G.S. & Reed, R.S., “Age Differences in Eyewitness Testimony”, Law & Human Behavior, Vol.10, 1986, 317.
- 37) Gupta, G.R. & Steven, M.Cox., “A Typology of Incest and Possible Inter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3, No.4, 1988, 301~310.
- 38) Horner, T.M., Guyer, M.J., Kalter, N.M., “Prediction, Prevention, and Clinical Expertise in Child Custody Cases in Which Allegations of Child Sexual Abuse Have Been Made Studies of Expert Opinion Formation”, Family Law Quarterly, Vol. 26, 1992, 162~170.
- 39) Jones, E. & Parkinson, P., “Child Sexual Abuse, Access and the Wishes of Children”, 9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the Family, Vol.9, 1995, 56~60.
- 40) Kaplan, M.S., Becker, J.V. & Martinez, D.F., “A Comparison of Mothers of Adolescent Incest vs. Non-Incest Perpetrators”, J. of Family Violence, vol.5, No.3, 1990, 212~213.
- 41) Kempe, R.S. & Kempe, C.H., Child Abuse, Harvard Univ. Press, 1978, 53~55.
- 42) Lamb, M.E., “The Investigation of Child Sexual Abuse; An Interdisciplinary Consensus Statement”,

- Child Abuse & Neglect, Vol.18, 1994, 1022, 1025, 1026~1027, 1023.
- 43) Levy, R.J., "Using Scientific Testimony to Prove Child Sexual Abuse", Family Law Quarterly, vol. 23, 1989, 388~389, 393~395, 400, 407~408, 395~396, 398, 400~402, 407~408, 391~392, 385, 384, 389~390.
- 44) Margolin, L. & Craft, J.L., "Child Sexual Abuse by Caretakers", Family Relations, oct, 1989, 451.
- 45) Meriwether, M.H., "Child Abuse Reporting Laws; Time for Change", Family Law Quarterly, vol.20, 1986, 150.
- 46) Myers, J.E., "Allegations of Child Sexual Abuse in Custody and Visitation Litigation; Recommendations for improved fact finding and child protection", Journal of Family Law, Vol.28, 1989~1990, 1.
- 47) Noh, H., "Family Treatment Models for incestuous Families", 한국가족치료학회지, vol.4, 1996, 97ff.
- 48) Nuce, G.R., "Child Sexual Abuse; A New Decade for the Protection of Our Children?", Emory Law Journal, Vol.39, No.4, 1991, 581.
- 49) Penrod, S., Bull, M.A., Lengrick, S., "Children and Observers and Witnesses; The Empirical Data", Family Law Quarterly, Vol.23, 1989, 411.
- 50) Pickett, J.G.,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mperiled; The new federal Rules of Evidence 413~415 And the Use of Other Sexual-Offense evidence in Washington", Washington Law Review, Vol.70, 1995, 883, 885~887, 899~902.
- 51) People v. Luna, 204 Cal.App. 3d 776, 250 Cal. Rptr. 878, 1988.
- 52) Plotnikoff, J. & Woolfson, R., Prosecuting Child Abuse; An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Speedy Progress Policy, Blackstone Press Limited, 1995, 49, 39, 79~81, 45ff, 67.
- 53) Skibinski, G.J. & Esser-Stuart, J.E., "Public Sentiment Toward Innovative Child Sexual Abuse Intervention Strategies; Consensus and Conflict", Juvenile & Family Court Journal, 1993, 18, 24.
- 54) Summit, R., "The 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Syndrome", 7 Child Abuse & Neglect, 1983, 177ff.
- 55) Wurtele, S.K. & Miller-Perrin, C.L., Preventing Child Sexual Abuse, Univ.of Nebraska Press, 1993, 145~146, 152, 153, 21~23.